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3. 개정이유

- 충청북도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로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5.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로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첫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셋째,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는 조례로서, 충북문화재단의 독립성 강화를 꾀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